

##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 4-바-1. 외국 학생 현황

####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4월(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공시시기】 : 2026년 8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공시내용】 : 2026년 국가별 외국 학생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 ○ 대학

(단위: 명, %)

기준 연도	국가	계 (D= A+B+C)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B)	연수과정				
			소계 (A)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소계 (C)	어학 연수생	교환 학생	방문 학생	기타 연수생
	합계													

  

언어능력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 (E/A)×100	기숙사 수용 여부					
소계 (E)	TOPIK 4급 이상 (예·체능 3급) 이상 학생 수	영어트랙 TOEFL IBT 59 수준 이상 학생 수	영어권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F)	수용	미수용	소계 (G)	수용	미수용

4. 여권은 재학생 수 및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 ○ 전문대학

(단위: 명, %)

기준 연도	국가	계 (D= A+B+C)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B)	연수과정				
			소계 (A)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소계 (C)	어학 연수생	교환 학생	방문 학생	기타 연수생
	합계													

  

언어능력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 (E/A)×100	기숙사 수용 여부					
소계 (E)	TOPIK 3급 이상 학생 수	영어트랙 TOEFL IBT 59 수준 이상 학생 수	영어권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F)	수용	미수용	소계 (G)	수용	미수용



② 기술대학: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에 의해 분류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사회실무계열	경영·관광·유통·보험 및 실용예술 등
자연·공학계열	해양·농학·수산·이학 및 공학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협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내·외국인 학생

【연수과정-어학연수생】: 대학부설 어학원 등 비학위과정(Non-degree Program)인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지만 학점은 취득하지 않는 유학생

【연수과정-교환학생】: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연수과정-방문학생】: 학교간의 협정이 아닌 개인이 해당 대학 방문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연수과정-기타 연수생】: 정규학위과정 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을 제외한 기타 연수생

【언어능력-TOPIK 4급 이상(예·체능 3급 이상) 학생 수(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위과정생 중 TOPIK 시험에 응시하여 4~6급(예·체능계의 경우 3~6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TOPIK IBT도 포함)

【언어능력-TOPIK 3급 이상 학생 수(전문대학)】: 학위과정생 중 TOPIK 시험에 응시하여 3~6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TOPIK IBT도 포함)

【언어능력-영어트랙 TOEFL IBT 59 수준 이상 학생 수】: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영어 능력 TOEFL IBT 59(또는 IELTS 5.5, CEFR B2, NEW TEPS 202) 이상 취득한 자. 단, TOEIC 성적은 해당되지 않음

※ 1인의 학생이 TOPIK 4급 이상(예·체능 3급 이상)(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TOPIK 3급 이상(전문대학) 자격과 영어트랙 TOEFL IBT 59 수준 이상일 경우, 둘 중 하나에만 입력

【언어능력-영어권 외국인 유학생】: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으로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한 자(출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 외교부)영사·국가/국가/지역 정보에서 국가를 검색한 후 언어 정보 확인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

【언어능력 충족 학생비율(%)】: 학위과정생 중 TOPIK 4급 이상(예·체능계의 경우 3급 이상), 영어 능력 TOEFL IBT 59(또는 IELTS 5.5, CEFR B2, NEW TEPS 202) 이상 획득한 학생 및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 비율(단, TOEIC 성적은 해당되지 않음) (언어능력 총계 / 학위과정(대학) 소계) × 100

【기숙사 수용 여부-학위과정(수용/미수용)】: 2026. 4. 1. 기준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

【기숙사 수용 여부-비학위과정(수용/미수용)】: 2026. 4. 1. 기준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인 비학위과정 유학생

※ 원격대학은 학제특성을 고려하여 기숙사 수용여부, 언어능력은 입력하지 않음

■ 참고사항

- 외국 학생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